

市場開放壓力과 對應의 政治經濟學的 分析

左 承 喜

本稿는 産業別 市場開放壓力과 對應의 樣態를 實證政治經濟學的 接近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韓美貿易摩擦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 분석에 있어서는 우선 市場開放을 “國際公共財”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수요와 공급구조를 정형화함으로써 理論的 分析를 제시하였다. 市場開放需要는 상대국 시장에서의 期待利得, 無貨乘車者인 第3國에 비한 국제경쟁력 수준, 對政府 로비의 強度 등의 正의 函數, 반면 시장개방의 공급은 시장개방에 따른 期待損失의 負의 函數, 시장개방에 대한 對政府 反對로비 強度의 正의 函數로 가설화하였다.

자료분석 결과는 대체로 理論模型의 시사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國內保護率이 높을수록, 美國內 産業集中率, 技術集約度가 높을수록 미국의 개방압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방후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대부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결과는 시장개방의 需要決定要因이 상대적으로 供給決定要因을 압도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本 研究의 주요 정책시사점으로서, 개방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期待利得을 낮추고, 개방에 대한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렌트」 追求 유인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I. 머리말

8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은 公正貿易(fair trade) 혹은 互惠主義(reciprocity)라는 기치

아래 交易相對國의 市場開放을 요구해 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市場開放壓力은 소위 일컫는 新保護主義의 가장 공격적 형태로서 과거의 多者主義로부터 雙務主義로의 미국 무역 정책전략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韓國의 경우도 1983년 이후 美國으로부터 市場開

筆者: 本院 研究委員

* 本稿를 읽고 유익한 論評을 해준 KDI의 李奎億, 楊秀吉, 李元暎, 姜信逸, 金址鴻 博士께 感謝를 드리며 동시에 KDI의 院內세미나에서 유익한 비평을 해준 同僚 研究委員들께도 感謝를 드린

다. 本稿의 資料整理를 위해 애쓴 鄭光燮, 趙庸斗 研究員과 원고정리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朴鉉淑 研究助員에게도 感謝를 드린다. 한편 本稿에서의 論議는 著者 個人的 意見이며 KDI의 公式見解와는 無關함을 밝혀 두고자 한다.

放壓力를 받아오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쌍무적 접근은 韓美間 交易環境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本稿의 目的은 貿易政策決定에 대한 實證的 政治經濟學理論을 援引하여 이러한 미국의 공격적 對外市場開放 要求와 韓國의 對應樣態를 분석함으로써 韓國의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데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존의 輸入規制政策에 대한 분석은 公共選擇理論(theory of public choice)에 입각한 「렌트」追求理論(theory of rent-seeking)이나 혹은 그룹行態理論(theory of groups) 및 規制理論(theory of regulation) 등을 援引하여 행해져 왔으며 보호주의의 實證的 政治經濟學이라는 새로운 연구분야로 발전되었다. 한편 최근에는 불완전경쟁하에서의 국제무역이론이 새로이 전개되면서 이에 맞추어 戰略的 貿易政策(strategic trade policy)이라는 새로운 貿易政策概念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시장개방압력과 이에 대한 對應樣態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론적이거나 실증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마도 市場開放要求라는 무역정책의 추구가 상대적으로 최근의 現象임에 기인하지 않나 사료된다. 이에 대한 理論的 分析들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우선 市場開放과 그 對應樣態는 결국 一國의 輸入規制(解除)政策과 다른 한편의 攻擊的 貿易政策의 상호 작용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상 두 갈래의 접근방법을 동시에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겠다.

第II章에서는 우선 本 研究의 研究主題인 시장개방이라는 決定變數(decision variable)의 “財貨”로서의 성격을 규명하고 同 財貨에

대한 需要와 供給分析을 통해 市場開放要求와 對應樣態의 분석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上記한 이론들의 주요 시사점에 기초하여 시장개방의 수요와 공급이론을 전개함으로써 기존 이론들의 종합을 시도하였다.

第III章에서는 第II章에서 개발한 분석들의 의거하여 美國의 對韓 市場開放要求 및 韓國의 對應樣態를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시장개방요구 품목들의 個別特性에 대한 정보가 거의 부재한 데 따른 극심한 자료의 한계 때문에 분석의 깊이가 크게 제약되고 있다.

第IV章에서는 本 研究의 政策示唆點을 정리하고 금후의 연구방향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피력하였다.

II. 理論的考察-分析들의 摸索

1. 國際公共財로서의 市場開放의 意義와 分析의 前提

市場開放要求와 이에 대한 대응과정은 “市場開放”이라는 財貨에 대한 需要와 供給의 상호작용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장개방의 需要側面分析은 市場開放要求의 수준을 결정하는 政治經濟學的 要因의 분석을 통해, 그리고 供給側面分析은 市場開放要求의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政治經濟學的 要因의 분석을 통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개방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우선 “市場開放”은 公共財(public goods)의 성격을 갖는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美國(國內企業)의 要求에 부응해서 한국이 해당품목의 시장을 개방할 경우, 韓國市場에의 접근은 동 품목을 생산하는 미국의 모든 기업에 허용되게 되며 最惠國待遇(MFN)가 적용될 경우에는 심지어 미국 이외의 다른 競爭國의 同種企業에게도 허용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시장개방을 進入障壁의 제거에 따른 該當市場에의 接近可能性(market accessibility)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시장개방은 순수한 의미의 엄격한 公共財 定義에도 부합된다고 하겠다¹⁾. 한편 시장개방을 주어진 크기의 該當市場에서 同種企業間의 판매량 경쟁의 허용이라고 볼 때에는 순수한 의미의 公共財 定義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어진 크기의 시장은 결국 시장 참여자의 수에 따라 개별구성원에 귀속될 수 있는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公共財의 가장 중요한 성격인 排除不可性이 “市場開放”이라는 “財貨”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시장개방의 국제적 性格을 감안, 國際公共財라 부르기로 하겠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시장개방의 需要供給決定要因分析은 결국 넓은 의미의 公共選擇理論의 응용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또한 시장개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規制解除에 대한 需要, 供給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規制理論의 응용을 통해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規制理論도 넓은 의미의 公共選擇理論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한편, 本稿의 가장 중요한 命題는 시장개방 요구는 시장개방에 의해 혜택을 보는 기업이나 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며, 반대로 시장개방의 수용은 시장개방에 의해 피해를 보는 국내기업이나 산업과 이득을 보는 또 다른 국내 이해집단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시장개방의 요구와 수용은 궁극적으로 통상의 利潤 혹은 富의 極大化行爲의 반영이라고 본다. 이 경우 市場開放壓力에 따른 政府間의 마찰은 각 관련 이해집단의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에이전트」로서의 정부를 통해 발현된 결과로 본다. 여기서 政府 및 政府內의 政策決定者들의 행태는 명시적으로 예의임을 밝히지 않는 한 公共選擇理論의 假說을 따라 合理的(rational)이라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 이들 행태는 여타 개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효용의 극대화, 즉 정치적 지지기반의 극대화나 개인적인 부의 극대화 논리와 일치한다고 본다.

2. 市場開放에 대한 需要

市場開放에 대한 需要를 결정하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輸出國의 기업이나 산업으로 하여금 自國政府에게 교역상대국에 대해 시장개방을 요구하도록 하게 유인하는 요인, 말하자면 실제 시장개방에 따라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期待利得의 정도와 주어진 期待利得下에서의 잠재적 시장개방요구가 관

1) 엄격한 의미의 公共財란 共同使用者 혹은 共同消費者의 數가 증가하더라도 이는 1개 구성원에 대한 供給量이 감소되지 않는 경우로서 극단적인 형태의 供給의 結合性(jointness in supply)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Samuelson(1954)을 참조.

런기업이나 산업과 정부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제 교역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요구로 나타나게 하는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 潜在的 市場開放要求의 決定要因

최근의 新國際貿易理論에 기초한 전략적 무역정책이론은 그 대전제로서 불완전경쟁적 산업구조와 그에 따른 해외시장에서의 獨占利潤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시장에 존재하는 독점이윤의 적극적 추구는 국내시장에서는 자원배분에 왜곡을 주지 않으면서 自國企業의 輸出增進, 生産擴大를 통해 生産者剩餘를 창출함과 동시에 해외시장에서는 외국기업의 獨占利潤을 自國의 獨占利潤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의 獨占利潤追求를 위한 적극적인 무역정책은 자

국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²⁾. 물론 이러한 전략적 무역정책의 추구를 정부가 주도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시장의 獨寡占의 構造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간의 의사결정의 상호의존성과 그에 따른 전략적 행동의 필요성으로 인해 정부의 개입이 주장되고 있다³⁾.

이러한 전략적 무역정책의 일반적인 방향으로서 自國企業의 數가 少數일 경우는 수출보조금을 통해 수출증진정책을 쓰고, 自國企業의 數가 다수일 경우는 自國企業間的 수출가격 경쟁에 따른 海外獨占利潤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輸出稅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本 研究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은 해외시장에서의 獨占利潤의 존재가 보다 공격적인 무역정책 추구의 유인이 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輸出補助金이나 輸出稅 등의 구체적인 利潤轉換政策 이전에 우선은 市場進入의 자유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장개방요구도 전략적 무역정책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시장개방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교역상대국 시장에서의 독점이윤의 존재 여부와 그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假說化한다면 잠재적 시장개방수요의 強度는 상대국시장에 期待利潤이 존재할 경우, 그리고 그 이윤이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⁴⁾.

물론 여기에서 期待利潤의 존재 여부를 현재의 既存企業들이 실제로 독점적 시장구조에 의해 이윤을 실현하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설령 輸入規制에 의해 보호받는 산업이 완전경쟁의 조건하에

2) 新國際貿易理論은 規模의 經濟, 不完全競爭, 製品差別化, R&D 投資 및 教育效果(learning by doing)에 따른 外部經濟效果의 存在 등 전통적인 Heckscher-Ohlin(H-O)理論과는 상이한 產業組織環境下에서의 交易의 유형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특히 產業內貿易의 理論의 根據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Helpman and Krugman(1985), Kierzkowski(1984), Grossman and Krugman(1985, 1986a) and Jacquemin(1982)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특히 新國際貿易理論에 기초한 전략적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Grossman and Richardson(1985)과 Krugman(1986 b)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3) 政府介入의 필요성은 게임理論 측면에서 볼 때 戰略的 行動(strategic move)의 威脅(threat)效果를 높임으로써 그 행동의 信賴性(credibility)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다. "戰略的"이라는 수식어는 의사결정 및 행동의 상호의존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政府의 介入可能性에 대해서는 다음 節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4) 市場開放追求가 海外市場에서 기대되는 「렌트」에 대한 추구라는 측면을 갖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논의가 다음 章에서 後述하는 「렌트」追求理論과 강한 유사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주지하기 바란다.

있다 하더라도 이 산업의 평균비용이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기업이나 산업에 비해 극히 높다면 시장개방 이후 이들 기업이나 산업이 시장을 독점화할 수 있는 確率은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다⁵⁾.

한편 海外市場에서의 獨占利潤의 실현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그 시장에서의 진출은 최소한도 추가적인 生産者剩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여전히 市場開放需要의 유인은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期待利潤에는 正의 正常利潤을 그 최소치로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期待利潤의 水準은 相對國市場의 시장구조와 보호장벽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수입규제와 동시에 進入制限에 의해 相對國市場이 독점화되고 있을 경우 및 進入制限이 부재하더라도 높은 생산비 때문에 輸入規制障壁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 있어 시장개방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다. 前者를 측정할 수 있는 변

수로는 關聯産業部門의 産業集中率이, 後者の 測定變數로는 保護率水準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전통적인 무역이론에 기초한 保護와 要素所得間의 관계가 Stolper-Samuelson 定理에 의해 요약되고 있는데 同 定理가 시장개방의 潛在需要分析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⁶⁾. 同 定理에 의하면 2개의 生産要素와 生産要素의 完全移動性을 가정할 때 국내시장의 보호는 보호되는 산업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의 소득을 상대적·절대적으로 높이고 반대로 집약도가 낮은 요소의 소득을 낮추는 효과를 갖는다. 이 定理를 역으로 응용하면, 해외시장의 개방을 통해 수출을 증진시킬 경우 該當 輸出産業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의 소득이 상대적·절대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집약도가 낮은 요소의 소득은 감소할 것이라는 시사점이 도출된다. 여기에다 전통적인 國際貿易理論 H-O 定理의 基本命題인 一國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特化할 것이라는 命題를 감안한다면, 국내시장의 保護要求는 상대적으로 稀少한 要素의 所有者들에 의해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증대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要素의 所有者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對韓市場開放要求는 미국이 자본과 기술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는 통설을 받아들인다면 資本家 및 熟練技術 勞動者그룹에 의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한편 Stolper-Samuelson 定理가 장기적 이론이라고 볼 때 단기적 현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要素의 移動性이

5) 生産效率성이 높은 기업의 獨占企業化 傾向 (efficiency argument)에 대해서는 Demsetz (1974) 참조. 한편 효율성의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獨占追求者에 의한 기존 경쟁시장의 독점화는 該當市場의 수요함수가 비탄력적, 供給函數가 탄력적일수록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독점에 따른 「렌트」追求側面에서 보면 前者의 경우 期待 獨占利潤을 높이고, 後者の 경우는 既存競爭企業의 期待損失을 낮출 것이기 때문에 독점화 경향은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서는 Demsetz(1984) 참조.

6) 本 文段에서의 논의는 完全競爭下的 전통적인 比較優位 貿易理論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논의한 新國際貿易理論과는 基本假定에서부터 상이하다. 여기서 논의되는 Stolper-Samuelson 定理나 H-O定理에 대해서는 大學水準의 國際貿易理論 교과서를 통해 쉽게 參照 可能하기 때문에 原典의 인용을 생략했다. Chacholiades(1978) 참조.

제약되었을 경우에는 다소 상이한 시사점이 나오게 된다. 만일 노동이나 자본이 체현한 部門固有의(sector-specific) 資産, 즉 人的資本이나 「하이테크」 物的資本 등에 의해 要素의 機會費用이 극히 낮아짐으로써 現産業에서 「렌트」를 실현하고 있을 경우 요소의 이동이 제약되게 되기 때문에 保護와 輸出增進에 대한 선호는 要素所有者間에 상반되게 나타나기 보다는 오히려 産業次元에서 産業間의 이해갈등을 반영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⁷⁾. 따라서 이러한 시사점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높은 산업의 경우 집약도가 높은 要素所有者는 물론 집약도가 낮은 요소의 소유자도 공히 대외시장의 개척을 회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를 韓美間의 比較優位 構造下에서 해석할 경우 미국의 對韓 比較優位가 높은 輸出可能品 중에서도 資本 및 技術集約도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혹은 산업으로부터의 對韓 市場開放要求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다음과 같은 式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D_i^p = F(EP_i, CA_i, K_i/L_{ui}, L_{si}/L_{ui}, T_i) \dots\dots\dots (1)$$

(+) (+) (+) (+) (+)
 (?) (?)
 (?)
 (+)

여기서 D_i^p 는 潛在的 市場開放需要, EP_i 는 期待利得, CA_i 는 比較優位 혹은 競爭力水準, K_i 는 資本, L_{ui} 는 未熟練 勞動者數, L_{si} 는 熟練勞動者數 그리고 T_i 는 技術水準을 나타내며 下添字 i 는 i 産業 혹은 i 製品을 나타낸다. 변수 밑의 부호는 期待符號를 나타낸다. 마지막 세 변수에 대한 기대부호는 두 關聯交易國間의 상대적인 要素賦存度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美國産業의 對韓 市場開放要求의 경우 기대되는 부호는 이중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EP_i 의 決定要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P_i = G(CR_i^*, PR_i^*, OT_i^*) \dots\dots (2)$$

(+) (+) (?)

여기서 상첨자 *는 相對國을 나타내며 CR_i^* 는 相對國의 i 産業 혹은 i 業種의 産業集中率, PR_i^* 는 相對國의 i 産業 혹은 업종의 제품에 대한 보호율, 그리고 OT_i^* 는 상대국의 i 産業의 구조를 결정하는 其他變數, 예를 들면 국내기업의 진입제한 여부, 需要 및 供給函數의 特性 등을 포함한다.

式 (1)과 (2)를 결합하면 다음 式을 얻게 된다.

$$D_i^p = H(CR_i^*, PR_i^*, CA_i, K_i/L_{ui}, L_{si}/L_{ui}, T_i, OT_i^*) \dots\dots\dots (3)$$

(+) (+) (+) (+) (+) (+) (+) (+)

여기서 期待符號는 韓美 貿易關係下에서의 期待方向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나. 實際 市場開放需要의 決定要因

前節에서 논의한 잠재적 시장개방수요는 관련기업이나 산업과 市場開放要求를 交易相對

7) 사실 Magee(1978)는 1973년 美國貿易法案 審議時的 法案에 대한 産業別 選好度 資料를 이용한 實證分析을 통해 Stolper-Samuelson定理보다도 Cairnes의 非競爭그룹(non-competing group) 假說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한편 Mussa(1974)는 어느 한 요소의 이동이 부재할 경우 保護 및 開放의 要素所得에 대한 시사점이 경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Baldwin(1984)은 이러한 研究들에 기초하여 보호에 대한 産業的 接近方法을 시도하였다.

國에 제시하는 「에이전트」로서의 政府間의 상호작용에 의해 실제 시장개방 요구로 구체화 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의 이해를 위해서는 시장개방이라는 財貨의 公共財의 성격이 시사하는 바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産業을 구성하는 일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該當産業의 海外市場 進入權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는 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期待利得의 정도에 의존하게 될 것임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일단 해외시장이 개방되었을 경우 進入權은 同一産業內의 모든 기업에게 허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개방이 最惠國待遇 原則下에서 이루어질 경우는 第3의 경쟁국 기업들에게도 허용되기 때문에 일개 기업에 귀속될 것으로 상정할 수 있는 期待利得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논리는 전체산업의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겠다⁸⁾. 따라서 이 경우 前節에서 논의된 잠재적 시장개방수요가 그대로 顯在化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하겠다.

그룹에 의한 그룹을 위한 公共財의 提供 (provision) 메카니즘은 그룹理論에 의해 논의되어 왔으며 한편 산업에 대한 公共財란 많은 경우에 정부의 특혜조치, 예를 들면 진입제한, 수입규제 등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規制理論에 의해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理論들의 일반적인 결론은 公共財의 供與 혹은 特惠措置供與程度는 公共財의 특성인 無賃乘車 (free ride)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궁극적인 公共財 혹은 특혜조치의 供給者로서의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혜택을 받는 그룹의 로비활동의 강도는 이 혜택을 통한 期待利得과 正의 관계를 갖지만, 期待利得은 逆으로 무임승차 정도와 負의 관계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⁹⁾.

무임승차 가능성하에서의 이해집단의 로비 강도를 설명하는 이론중에서 특히 本稿의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이론으로서는 小그룹理論을 들 수 있겠다. 이 理論은 Olson(1971), Stigler(1971, 1974), Peltzman(1976), Brock and Magee(1978) 등에 의하여 정형화되었고, 壓力團體理論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룹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룹構成員들의 1인당 기대이득이 높을수록 로비의 강도가 높다고 본다. 그룹의 규모가 작을수록 그리고 그룹構成員들의 크기의 격차가 심할 경우, 一個構成員(後者の 경우는 가장 큰 규모의 구성원)의 1인당 기대이득은 이들이 독자적으로 公共財의 획득을 추구할 경우의 전체 로비費用(전체 公共財의 生産 혹은 獲得費用)을 능가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설령 여타 구성원의 무임승차가 존재하더라도 該當公共財의 生産供與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

8) 여기서의 논의는 시장개방을 純粹公共財로서 보다는 消費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數에 따라 각자에 귀속되는 公共財의 供給量이 감소하는, 즉 일개 구성원에 귀속될 판매량이 여타 進入者의 수에 따라 감소하게 되는 넓은 의미의 公共財로 해석하고 있음에 주의하기 바란다.

9) 註 4)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장개방에 따른 期待利得에 대한 「렌트」追求側面을 강조한다면 문제는 주어진 期待「렌트」下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렌트」追求行爲를 할 것이냐 하는 데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을 취하더라도 「렌트」에 대한 私有權이 명확히 정의되지 못할 경우에는 여전히 무임승차 현상에 따른 「렌트」追求行爲의 의욕을 沮喪시키는 효과가 따를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本文과 마찬가지로 무임승차현상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접근방법을 취하든 궁극적인 시사점은 유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다. 한편 그룹의 크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어진 公共財 獲得費用下에서 公共財에 대한 1人當 期待歸屬分이 높을수록 구성원들의 무임승차 유인은 낮아지게 되고 따라서 該當公共財의 供與可能性은 높아지게 된다. 한편 그룹의 특성을 포함한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公共財의 生産費, 다시 말해 公共財의 궁극적 생산자로서의 정부에 대한 로비費用이 낮을수록 該當公共財를 획득하게 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시장 개방이라는 公共財의 獲得可能性은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그 산업의 집중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관련 로비費用이 낮을수록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Stigler(1974)는 무임승차에 대한 市場메카니즘에 의한 해결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非對稱性理論(asymmetry solution)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그룹(혹은 産業)內的 구성원들의 該當公共財에 대한 利害關係의 相異度가 높을수록 무임승차 유인은 낮아지고 公共財의 供與可能性은 높아진다고 본다. 예를 들어 同一産業內的 대기업은 통상 여러 종류(variety)의 제품을 생산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單一(single variety)製品만을 생산할 경우 이 산업전체에 공여되는 公共財의 형태(製

品種類의 포괄범위 등)에 따라 그 혜택이 중소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유리하게(혹은 더 불리하게) 돌아가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구성원들 전체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公共財의 供與可能性은 높아지게 된다¹⁰⁾.

한편 시장개방의 國際公共財의 性格을 감안한다면 해당기업이나 산업의 국제시장에서의 競爭的地位나 獨占的地位가 높을수록 다른 조건이 같다면 실제 시장개방수요의 강도는 높아질 것이다. 同種의 第3國企業이나 産業에 비해 國際競爭上的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을 경우 期待利得의 實際歸屬分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며 무임승차의 公共財 供與沮喪效果는 낮아질 것이다.

이상의 논의의 本研究主題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잠재적 시장개방수요하에서 이 수요를 政府를 통해 실제 시장개방요구로 顯在化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해당산업의 집중도가 높을수록 산업내의 企業間 同質性이 낮을수록, 그리고 第3國企業이나 産業에 비해 국제경쟁력상의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을수록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該當 産業內的 여러 기업으로부터의 시장개방요구를 결집하고 이를 정부에 대해 로비하는 데 따르는 로비費用이 높을수록(다른 조건이 같다면) 실제 시장개방 수요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¹¹⁾.

이를 요약하면 다음 式 (4)로 나타낼 수 있다.

$$D_i^A = M(UP_i, CR_i, H_i, CA_i^*, CR_i^*, P_i) \dots\dots\dots (4)$$

(-) (+) (-) (+) (+)
(+) (?)

여기서 상첨자 A가 붙은 D_i^A 는 實際市場

10) 이외에도 관련된 理論으로서 Olson(1971)에 의해 제시된 副產物理論(by-product theory)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그룹이 구성원들에게 公共財를 一般財貨(private goods)에 끼어 팔므로써 無賃乘車可能性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주지하는 바와 같이 市場메카니즘에 의존하지 않고 강제에 의해 무임승차를 배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로비의 강도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주제의 성격상 自由市場 메카니즘에 의한 公共財의 供與可能性만을 논하고 있음에 주의하기 바란다.

11) 여기서는 시장개방의 限界效用遞減을 상정한다.

開放需要, UP_i 는 單位市場開放에 대한 로비費用, 즉 로비와 관련된 정보 및 거래비용을 포함하는 廣義의 로비費用(單位價格), CR_i 는 i 産業의 自國內에서의 産業集中率, H_i 는 i 産業의 同質性指數, CA_i^j 는 第3國에 대한 比較優位指數, CR_i^j 는 該當企業이나 産業의 世界市場占有率, D_i^j 는 전과 같이 潛在市場開放需要를 나타내며 期待符號는 괄호안에 표시하였다. 여기서 上添字 w 는 世界市場을 나타내며 CR_i^w 는 獨占的地位를 측정하는 변수로 도입되었다.

式 (4)에서 P_i 는 i 産業을 위해 상대국에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이나, 요구한다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압력을 가할 것이나 하는 정치적 결정에 있어 政府 및 政府官吏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나타낸다. 이하의 논의는 P_i 를 定型化하는 데 할애하기로 하겠다. 물론 여기서 自國政府에 의한 시장개방압력의 중개가 꼭 불가피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룹理論에 의거할 때 개별기업이나 산업이 강력한 로비를 할 수 있는 여건하에 있고 또한 시장개방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극히 높은 경우에는 自國政府를 우회하고서 직접 상대국정부에 대해 해당품목이나 산업의 시장개방을 위해 로비를 할 가능성이

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對外市場開放要求의 중개를 자동화하고 있을 경우에는 自國政府에 대한 로비費用은 최소한에 불과할 것이며 정부의 정치적 고려의 영향도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P_i 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은 중개가 자동화된 경우에도 정부의 對交易國 開放要求의 強度가 품목별·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¹²⁾.

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요구의 궁극적인 공급자로서의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公共選擇理論의 테두리 안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公共選擇理論의 가장 중요한 공헌중의 하나는 政府 혹은 政府內의 政策擔當者들도 私個人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效用(혹은 富)의 극대화 논리에 의거하여 행동한다는 명제의 도입이라 하겠다¹³⁾. 이에 의하면 기업이나 산업으로부터의 상대국에 대한 산업별 시장개방요구가 정부에 제시될 때 이러한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 실제로 상대국에 요구할 것이나, 그리고 상대국에 대한 요구의 경우도 어느 산업에 더 비중을 두고 할 것이나 하는 결정은 정부의 國內外支持基盤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요구가 兩國의 交易關係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負의 效果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 할 것이다.

國內支持基盤의 측면에서 볼 때 一個産業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그 산업이 어느 일정지역에 집중됨으로써 그 산업의 政府에 대한 支持與否가 강하게 표출되어 外部經濟 및 非經濟效果를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산업이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地域

12) 政府의 仲介가 거의 자동화된 미국의 경우도 對韓 市場開放要求의 強度가 품목별·산업별로 상이하다는 사실을 주의하기 바란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기 위해서는 政府의 行態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

13) 이러한 명제를 가장 明示의으로 개진하고 이 명제를 既存 經濟問題에 케이스별로 응용한 참고문헌으로서 Buchanan and Tollison(1972)을 들 수 있으며, 특히 同書의 제2부인 Buchanan(1972)은 이 명제의 經濟分析上的 意義를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다. 公共選擇理論의 理論的 「서베이」는 Mueller(1976)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나 人士와 관련을 맺고 있거나, 그 산업의 성패가 정부의 경제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쳐 결국 정부에 대한 정치적 支持度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될 경우 등에 있어 정부의 긍정적인 반응도가 높아질 것으로 볼 수 있다. 國外支持基盤의 側面에서 볼 때에는 우선 시장개방요구의 國際規約이나 慣例 등과의 합치여부(예를 들면 GATT規約 혹은 互惠原則 등), 그러한 전반적이거나 혹은 특정 품목이나 산업에 대한 시장개방요구가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려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만일 시장개방요구의 대상으로서 상대국을 선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에는 서로간의 정치외교적 측면에서의 유대관계나 혹은 상대국의 경제발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상대국의 산업이 시장개방에 직면해서 견디어 낼 수 있는 經濟力의 程度 등도 고려될 것으로 기대된다¹⁴⁾.

이러한 시사점을 미국의 對韓 市場開放要求

와 관련해서 볼 때 몇가지 흥미있는 측면을 관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對韓 市場開放要求時 議會의 保護主義的 傾向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이 성실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도 결국은 행정부에 대한 支持度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요 開放要求品目 경우는 배후에 영향력 있는 의회의원들의 적극적인 開放壓力이 개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다¹⁵⁾.

한편 戰略的 貿易政策的 側面에서 볼 때에는 정부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해외시장에서의 利潤轉換 可能性이 높은 품목에 대해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開放要求品目의 選定時에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하겠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이나 산업의 이해와 정부의 이해가 대저 일치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차별적 受容程度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¹⁶⁾.

여기서의 논의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의 식(5)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P_i = P(Z_i, OP_i) \dots\dots\dots (5)$$

(+) (?)

여기서 Z_i 는 i 산업의 정치적 세력으로서의 크기를 측정하는 변수로서 雇傭量 혹은 出荷額 등이 해당될 것이며 OP_i 는 政府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기타변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該當産業의 地域的 集中度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¹⁷⁾.

式 (3), (4) 그리고 式 (5)를 결합하면 다

-
- 14) 對外的 側面에서 본 先後進國間의 무역마찰의 성격에 대한 논의 및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선진국 상호간에 대해서보다도 後進國에 더 강하게 賦課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Jwa(1987)를 참조하기 바란다.
 - 15) 특히, 포도주의 경우는 캘리포니아 某 상원의원, 알팔파의 경우는 상원의 주요 소위원회 의장, 담배의 경우는 남부의 담배주산지 출신의 某 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16) 최근 미국의 貿易政策當局은 新國際貿易理論에 의거한 전략적 무역정책의 현실적용 가능성에 대한 研究論議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rugman(1986b) 참조.
 - 17) 여기서는 정부의 政策決定이 合理的 自利追求 (rational self-interested) 行爲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지만, 만일 정부가 國家經濟政策 目標에 충실하게 공공의 복지를 위해, 때로는 施惠의

음의 實際 市場開放需要函數를 유도할 수 있다.

$$D_i^A = D(UP_i, CR_i, H_i, CA_i, K_i/L_{ui}, (-) (+) (-) (+) (+) L_{si}/L_{ui}, T_i, Z_i, OP_i, CA_i^w, CR_i^w, (+) (+)(+)(?)(+) (?) CR_i^*, PR_i^*, OT_i^*) \dots\dots\dots (6)$$

혹은 여기에 式 (2)를 이용하여 期待利得 (EP_i)의 函數로 표시하면

$$D_i^A = D(UP_i, EP_i, CR_i, H_i, CA_i, K_i/L_{ui}, (-)(+)(+)(-)(+) (+) L_{si}/L_{ui}, T_i, Z_i, OP_i, CA_i^w, CR_i^w) \dots\dots\dots (7)$$

과 같이 쓸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의 편의상 式 (6)과 (7)의 函數記號를 같은 D(·)로 표시하였다. 式 (7)을 D_i^A와 UP_i의 관계로 상징하여 도표로 그리면 [圖 1]의 D(·)와 같은 需要曲線을 얻게 된다.

(benevolent)으로 행동한다고 본다면 OP_i에 포함되는 代用變數는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도록 定型化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 경우 미국의 예를 든다면, 該當産業이 서비스部門이나 「하이테크」産業처럼 미래의 戰略産業인가의 여부 혹은 貿易收支赤字 解消에의 寄與可能性 與否 등을 측정하는 변수가 OP_i에 포함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非自利的 政府의 意思決定側面은 시장 개방의 경우보다 오히려 수입규제의 경우에 더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後述하는 3-가-2)항에서 좀더 구체적인 假說化를 통해 논의될 것이다. 물론 OP_i에는 여타 국제적인 고려사항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시장개방압력을 행사함에 따른 兩國交易關係에 미칠 負의 목시적 비용부담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비용측면은 광의의 單位價格 UP_i에 포함되는 것으로 상정한다.

3. 市場開放의 供給

市場開放의 供給函數에 대한 分析도 前章의 需要函數分析과 유사한 논리에 의거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기존의 輸入規制下에서 높은 「렌트」를 실현하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일수록 시장개방에 따른 期待損失은 그만큼 커질 것이며, 따라서 시장개방에 대한 저항도 그만큼 강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의 供給은 그 산업내의 「렌트」의 負의 函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해당산업의 「렌트」의 수준은 그 산업에 대한 보호, 즉 수입규제의 강도 및 여타 진입제한 등의 특혜조치의 강도와 正의 關係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를 式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S_i^* = S(EL_i^*, \text{기타관련변수}) \dots\dots\dots (8)$$

$$EL_i^* = R_i^* = R(CR_i^*, PR_i^*, OT_i^*) \dots\dots\dots (9)$$

여기서 상첨자 *는 市場開放의 受容國을, 하첨자 i는 該當産業을 나타낸다. S_i^{*}는 市場開放供給, R_i^{*}는 「렌트」, 그리고 CR_i^{*}와 PR_i^{*}는 전과 같이 각각 該當産業의 集中率과 該當産業에 대한 保護水準을 나타낸다. EL_i^{*}는 市場開放에 따른 期待損失을 나타내는데 陽의 수치로 측정된다.

논리상 式 (9)는 前節에서 논의한 式 (2)와 밀접한 關係를 갖는다.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본 期待利得(EP_i^{*})은 시장개방을 당하는 기업의 期待損失(EL_i^{*})과 일정한 正의 關係를 유지할 것이다. 만일 시장개방이 궁극적으로 完全競爭市場으로의 전환을 의미

한다면 EL_i^* 는 既存의 生産者剩餘와 獨占의 價格의 유지에 의한 消費者剩餘의 企業에로의 귀속분의 합이 될 것이나 EP_i 는 단순히 生産者剩餘의 전환분에 불과할 것이다. 만일 시장 개방 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진입제한이 가해진다고 볼 때에는 일부 消費者剩餘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EP_i \leq EL_i^*$ 의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需要函數의 價格彈力性이 클수록 EP_i 와 EL_i 의 차이는 작아질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式 (2)의 $G(\cdot)$ 함수 대신 式 (9)에서는 $R(\cdot)$ 함수를 도입하였다.

이하에서는 우선 既存 保護水準(PR^*)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논의하고 차례로 기타관련 변수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式 (8)과 (9)의

완전한 定型化를 시도해 보기로 하였다.

가. 保護에 대한 需要와 供給：
均衡保護水準의 決定

實證的 保護理論(positive theory of protection)으로 통칭되는 수입규제의 정치경제학적 분석모형은 公共選擇理論에 의거한 政府의 政策決定過程의 內生化가 이미 논의된 그룹理論(혹은 로비理論) 및 規制理論에 접목되면서 새로이 전개된 「렌트」追求理論, 좀더 넓게는 「두피」(DUP) 追求理論(theory of directly unproductive, profit-seeking)의 테두리 안에서 발전되어 왔다¹⁸⁾.

이들 이론에 의하면 進入制限, 關稅率의 決定, 輸入쿼터적용 등의 정부의 규제조치하에서는 일반적으로 혜택(렌트)을 받는 그룹과 피해를 입는 그룹이 생기게 되며, 따라서 잠재적으로 혜택을 기대하는 그룹에게는 정부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제조치를 취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부그룹의 특혜조치 추구는 政府政策決定者들의 合理的 行動(rational behavior)을 가정할 때, 궁극적으로 정책의 채택 및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內生化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일상적인 정부의 규제조치들은 특혜조치를 통해 「렌트」를 추구하는 일부그룹의 로비활동과 규제조치를 결정하는 정책담당자들의 效用極大化 行爲의 產物이라고 본다.

이러한 논리가 輸入規制政策의 분석에 응용됨으로써, 關稅追求(tariff-seeking), 輸入쿼터追求(quota-seeking)나 關稅輸入追求(revenue-seeking)理論 등이 전개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個別理論의 종합을 시

18) 「렌트」追求理論에 대해서는 Buchanan, Tollison and Tullock(1980)과 Tollison(1982)을 그리고 넓은 의미의 DUP 追求理論에 대해서는 Colander(1984), Bhagwati(1980, 1982a, 1983) 및 Bhagwati and Srinivasan(1980)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두 이론의 차이는 다분히 의미학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는데 前者가 「렌트」追求에 따른 로비활동의 資源浪費의 性格을 중시하여 「렌트」追求는 복지를 감소시킨다고 상정해 온 반면 後者は 「렌트」追求가 次善의 狀況(second-best situation)下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資源配分 歪曲(기존의 規制)下에서의 추가적인 歪曲(「렌트」追求)은 오히려 복지를 증진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렌트」追求行爲는 전체 경제의 복지측면에서 볼 때, 前者에 의하면 모든 경우에 비생산적인 반면 後者の 경우는 직접적으로는 非生産的(directly unproductive)이나 궁극적으로는 生産的(福祉增進的)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Bhagwati는 「렌트」追求行爲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DUP 行爲라는 개념을 사용할 것을 제창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Bhagwati의 前掲論文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本稿에서의 논의는 이러한 행위의 복지측면의 효과보다는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산업별 혹은 품목별 輸入規制의 樣態를 설명하는 데 주목적이 있음을 주의하기 바란다.

도한 Baldwin(1982, 1985), Bhagwati(1982 b), Brock and Magee(1978)와 Lavergne(1983) 및 Cline(1984)의 논의를 중심으로 保護의 需要 및 供給메카니즘을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¹⁹⁾.

1) 保護에 대한 需要²⁰⁾

保護에 대한 需要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음의 몇 가지 갈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前節에서 논의한 전통적인 貿易理論의 保護와 要素所得間의 관계에 대한 示唆에 의하면 一國에 있어 상대적으로 최소한 要

素所有者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要素所有者에 비해 보호를 선호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 노동이 자본이나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풍부하다는 통설을 받아들인다면 資本家階級이나 「하이테크」技術의 所有者들이 더 보호를 선호할 것이다. 동시에 短期的의 要素移動의 不在를 상정한다면 자본이나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의해 상대적으로 보호가 더 요구될 것이며 要素移動의 不在로 인해 同産業에 종사하는 노동자그룹도 이러한 보호요구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²¹⁾. 이러한 측면을 韓美交易關係下에서 본다면, 시장개방압력에 따른 마찰이 높은 산업이나 품목은 양국의 경우 모두 자본집약적이거나 기술집약적 혹은 土地集約的일 가능성이 勞動集約的일 가능성보다 높다 하겠다²²⁾.

둘째로, 該當産業의 比較優位 정도와 競爭輸入에 의해 입는 피해의 정도가 보호에 대한 수요의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比較劣位 輸入代替産業의 보호요구 가능성은 부연을 요하지 않는다 하겠다. 한편 競爭輸入에 의한 피해가 높은 산업일수록 보호요구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나 개발도상국과 같이 산업의 始發서부터 수입규제를 시행해 온 경우에는 이러한 假說의 설명력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선진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競爭輸入에 의한 피해의 測定變數로서 輸入浸透率(import penetration ratio)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²³⁾.

세째로, 해당산업이 輸出依存도가 높을수록 보호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이 경우는 보호가 해외에서의 報復規制措置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네째로, 특정산업의 보호에 대한 잠재적 수

19) Bhagwati(1982)의 경우는 특히 同書의 第2章을 참조하기 바란다. Baldwin(1985), Cline(1984)과 Lavergne(1983)는 기존 연구에 대한 광범위한 「서베이」와 동시에 독자적인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同理論을 응용한 실증분석으로는 Helleiner(1977), Pincus(1975) 그리고 Ray(1981)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Baldwin, Cline, Helleiner, Pincus 그리고 Ray의 경우는 보호의 정치경제학이론의 시사점을 지지하는 실증분석 결과를 얻고 있는 반면 Lavergne의 결과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0) 保護에 대한 需要는 시장개방에 대한 수요와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前節에서 논의된 市場開放需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많은 부분이 그 영향의 부호를 바꾸면 本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논의를 간략화하였다.

21) Baldwin(1984) 참조.

22) 逆으로 미국의 對韓輸入規制의 경우에는 오히려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나 품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러한 측면을 동태적으로 파악한다면 一國의 要素賦存度도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이나 품목의 종류도 經濟發展段階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3) 선진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대부분은 輸入浸透率(import penetration ratio)을 說明變數로 이용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고 있으나 이러한 변수가 한국과 같은 나라에 적용되었을 때 같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요는 상기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潛在需要가 顯在化하는 과정은 결국 정부에 대한 보호요구의 로비과정의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의 설명은 결국 前章에서 논의된 그룹理論의 적용을 요한다 하겠다²⁴⁾. 이는 輸入으로부터의 보호조치가 결국은 該當產業內의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보호라는 재화는 公共財的 性格을 갖는다는 사실에 연유한다. 따라서 로비에 따르는 비용을 포함하여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무임승차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있는 여건하의 산업일 수록 로비의 강도는 커질 것이며 그만큼 보호를 받을 확률은 커지게 된다. 앞서서와 같이 로비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代用變數로서는 통상 產業集中率이 이용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의 式 (10)으

로 표현할 수 있다.

$$DPR_i^* = N(K_i/L_i^*, CA_i^*, IP_i^*, CR_i^*, ED_i^*)$$

(+) (-) (+) (+) (-)

..... (10)

여기서 DPR_i^* 는 保護에 대한 需要 혹은 保護를 받을 確率을 나타낸다.

K_i/L_i^* 는 i 産業의 資本集約度, CA_i^* 는 i 産業의 比較優位變數, IP_i^* 는 i 産業의 輸入浸透率, CR_i^* 는 전과 같이 產業集中率, ED_i^* 는 輸出依存度를 나타낸다. 期待符號는 괄호 안에 표시하였으며 K_i/L_i^* 의 부호는 勞動豐富國인 韓國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²⁵⁾.

2) 保護의 供給

保護의 供給分析은 보호를 실제로 공급하는 정부의 의사결정메카니즘에 의존하게 된다.

우선 정부가 단순히 이해집단의 로비에 순응할 경우 보호에 대한 공급은 보호의 수요를 그대로 顯在化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政府(혹은 政府內의 政策決定官僚)가 前節에서와 같이 효용극대화 혹은 정치적 지지기반의 극대화를 위해 행동한다고 본다면 보호의 공급을 가능한 한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도록 조절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保護要求産業의 정치적 중요성이 제1의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²⁶⁾.

마지막으로 정부가 도덕적 차원에서 公共의 善을 위해 혹은 국가정책이라는 차원에서 國家經濟政策 目標達成을 위해 행동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前者의 경우는 施惠의 政府(benevolent government)假說, 後者の 경우는 開化된 政府(enlightened government)假說이라고 부른다²⁷⁾. 前者의 假說에 의하면

- 24) 前述한 “(II-2) 實際開放需要의 決定要因” 제4의 논의를 참조하기 바란다.
- 25) 既存의 研究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代用變數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가능한 논의를 간략화하기 위해 변수들의 수를 축소하도록 노력하였다.
- 26) 같은 맥락에서 選舉에서의 再選을 위한 投票數 極大化論理에 따라 정책결정이 좌우된다고 보는 가설을 投票加算機模型(the Adding-Machine Model)이라고 부른다(Caves, 1976 참조). 그러나 이러한 모델은 선거의 회수 등에 따른 制約, 選舉公約에 대한 投票者들의 認識不足 등의 경우 그 설명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특히 한 국과 같이 과거 선거의 회수나 의의가 선진국의 경우와 크게 달랐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하겠다. 本文에서의 政治的 基盤의 極大化라는 개념은 물론 經濟部處 상호간의 지지기반이나 主導權爭奪競爭, 政府와 國會의 主導權競爭, 一個部處內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局間의 競爭 등의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27) 이 假說들은 本稿의 전면에 흐르는 合理的 自利追求(rational self-interested) 政府官吏라는 假說과는 배치된다는 점을 주의하기 바란다. 이 假說들의 보호이론에의 適用必要性에 대한 주장은 Lavergne의 前掲書 參照. 역시 Baldwin(1985)도 이 假說의 保護理論에의 導入必要性을 示唆하고 있다.

수입경쟁으로 인한 被害産業이 특히 非熟練 低賃金勞動者를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하고 있는 경우 이 산업이 보호를 받게 될 확률은 높아질 것이며 國防의 중요성이 비경제적 제약으로 작용할 경우 防衛産業이 보호를 받게 될 확률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한편 後者의 假說과 같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經濟論理에 따른 전체 國民經濟의 效率性 및 福祉側面을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여길 경우 輸入競爭에 따른 調整費用 側面, 혹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幼稚産業保護理論 등에 의거 비교우위가 약한 산업을 보호하게 될 확률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의 式 (11)과 같다.

$$SPR_i^* = T(Z_i^*, PS_i^*, AD_i^*, ND_i^*, SI_i^*)$$

(+)(+)(+)(+)(+)

..... (11)

28) 유사한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Cline(1984) 참조 바람. Cline은 수요가격을 보호받을 確率 1%當 로비費用으로 정의하고 보호의 한계효용체감을 가정하고 있으며 공급가격을 보호조치를 취할 確率 1%에 대해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費用遞增을 상정하고 있다. 정부의 비용에는 빈번한 保護供給에 따른 支持度의 약화 가능성, 보호에 따른 전체경제에의 資源配分歪曲可能性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均衡概念은 的確한(exact) 1관계라기보다는 하나의 「휴리스틱」(heuristic)한 관계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단위로비費用과 정부의 목시적 한계비용이 균등화될 수 있는 정치적 시장메카니즘이 완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통상의 보호이론에서 상정하는 바와 같이 보호에 대한 完全競爭政治的 市場의 존재를 가상한다.

29) 통상의 보호이론의 실증분석은 式 (12)나 그 변형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既引用한 保護理論의 文獻들을 참조바란다. 同式은 또한 한국의 現輸入規制樣態를 설명하는 데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SPR_i^* 는 保護의 供給 혹은 保護가 공여될 確率을 나타낸다. Z_i^* 는 i 産業의 크기로서 政治的 重要性을 測定하고, PS_i^* 는 그 産業의 公共의 同情을 유발할 수 있는 특성, 예를 들면 未熟練勞動者의 比率 등을 나타내며, AD_i^* 는 그 産業의 급격한 輸入增大에 따른 調整費用, ND_i^* 는 防衛産業 與否를 나타내는 變數, SI_i^* 는 戰略産業 여부를 나타내는 變數로 幼稚産業保護論의 保護政策決定에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期待符號는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3) 均衡保護水準의 決定

式 (10)과 (11)의 需要供給函數는 배후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목시적으로 치러야 할 費用變數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式 (10)에는 既存變數 이외에 수요자들이 치러야 할 保護單位當 價格으로서의 로비費用이, 式 (11)에는 供給者(政府)가 보호를 공여함으로써 치러야 할 목시적 한계비용으로서의 공급가격이 내재하고 있다고 상정할 수 있다. 균형에서 이 두 가격이 균등화된다고 가정하고 同價格變數를 置換해 버리면 이 두 式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축약형의 保護函數를 유도할 수 있다²⁸⁾.

$$PR_i^* = J(K_i/L_i, CA_i^*, IP_i^*, CR_i^*, ED_i^*)$$

(+)(-)(+)(+)(-)

$$Z_i^*, PS_i^*, AD_i^*, ND_i^*, SI_i^* \dots (12)$$

(+)(+)(+)(+)(+)

여기서 PR_i^* 는 (均衡)保護水準을 나타낸다. 나머지 변수는 전과 같다²⁹⁾. 式 (12)를 式 (9)에 代入함으로써 期待損失函數의 축약형을 유도할 수 있다.

$$\begin{aligned}
 EL_i^* &= K(K_i/L_i^*, CA_i^*, IP_i^*, CR_i^*, ED_i^*, \\
 &\quad (+) \quad (-) \quad (+) \quad (+) \quad (-) \\
 &\quad Z_i^*, PS_i^*, AD_i^*, ND_i^*, SI_i^*, OT_i^*) \\
 &\quad (+) \quad (+) \quad (+) \quad (+) \quad (+) \quad (?) \\
 &\dots\dots\dots(13)
 \end{aligned}$$

나. 市場開放의 供給

여기서는 주어진 期待損失(EL_i^*)下에서 시장개방의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기타 關聯要因들을 논의함으로써 式 (8)의 定型化를 시도해 보기로 하겠다.

우선 시장개방을 통해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 이해집단으로서 소비자 그룹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시장개방에 따라 기존의 보호조치로 인해 유실했던 消費者剩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의 시장개방에 대한 선호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통상의 논의에 있어서는 이들 그룹의 역할을 별

로 중요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바로 消費者 그룹의 特性, 예를 들면 광범위하게 흩어진 大그룹이라는 성격 때문에 무임승차의 排除可能性이 낮음으로 해서 압력단체로서의 조직화가 어렵게 되고 따라서 對政府로비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³⁰⁾. 그러나 政府의 意思決定메카니즘이 단순한 이해집단의 「에이전트」로서가 아니라 公益의 측면을 감안하고 있다고 상정한다면 모래알 같은 소비자들의 입장이 정부를 통해 강한 목소리로 변신될 수도 있다 하겠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정부의 輸入自由化品目 選定基準에서 消費者剩餘의 提高에 대한 고려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측면이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³¹⁾.

이러한 정부의 施惠的 行爲側面(benevolent government)이 배제된다면 결국 시장개방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앞에서 논의된 보호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에 의해 설명되게 된다 하겠다. 다시 말해 정부의 시장개방에 대한 입장은 均衡保護水準(PR_i^*)의 決定메카니즘을 통해 이미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³²⁾.

그러나 本稿의 주제와 관련해서 볼 때 한가지 시장개방의 供與가 보호의 제공에 비하여 특이한 측면은 시장개방압력이 외부로부터 온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의 시장개방에 대한 입장이 前述한 전략적 무역정책적 고려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오히려 國內獨占利潤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 혹은 외부경제효과나 학습효과가 높은 技術集約産業에 대한 保護努力 등이 對外市場開放의 原則決定에 혹은 개방압력의 對應

30) 前節의 均衡保護水準決定模型의 논의에서 보호의 반대세력으로서의 消費者 그룹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 연유한다. 그러나 消費者利益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적절한 代用變數를 사용함으로써 용이하게 이러한 측면을 勸案할 수 있을 것이다.

31) 한국의 수입자유화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 및 정부의 수입자유화품목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楊秀吉(1984)을 참조. 수입자유화품목 선정기준으로서는 주로 경쟁력 보유여부, 경쟁력 향상에의 기여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있는 것은 독과점품목의 개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上記論文 p. 533을 참조).

32) 예를 들면 式 (11)에서 保護供給(SPR_i)의 負의 函數를 줄은 의미에서의 시장개방의 공급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式 (10)의 保護需要(DPR_i)의 負의 函數는 市場開放需要函數인 (6)이나 (7)에 흡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既存保護에 대한 시장개방의 경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따른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³³⁾.

또한 외국의 기업이나 산업에 국내시장의 개방을 허용할 경우 정부로서는 응분의 費用負擔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선 개방을 당하는 기존의 보호산업으로부터의 지지기반의 약화는 물론 외교정책적 측면에서는 외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감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한 전략적 무역정책의 견지에서 볼 때에는 國內獨占利潤이 내국인에게서 외국인에게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또한 암묵적인 시장개방의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시장개방에 따른 國內消費者剩餘의 增加, 資源配分の 效率性提高 등은 전체경제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의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보호조치가 消費者剩餘의 減少, 資源配分の 歪曲效果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적어도 시장개방은 정부에게 陽의 費用을 초래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정부가 느끼는 비용부담의 증가는 시장개방의 정도가 높을수록 높아진다고 가정한다³⁴⁾.

이상의 논의를 감안하면 式 (8)은 다음과

같이 고쳐 쓸 수 있을 것이다.

$$S_i^* = S(EL_i^*, UP_i^*, OP_i^*) \dots \dots \dots (8)$$

(-) (+) (?)

여기서 UP_i^* 는 單位當 市場開放에 따른 목시적 단위비용을 반영하는 供給價格, OP_i^* 는 정부의 대내외 政治的 考慮를 반영하는 변수이다. 여기서 OP_i^* 는 전략적 무역정책측면을 포함하여 既存 保護供與時와는 다른 시장개방에 관련된 정치적 고려를 다 포괄하는 것으로 상정된다.

한편 EL_i^* 를 설명하는 式 (13)을 上記 式 (8)에 대입하면 축약형 공급함수를 얻는다. 편의상 式 (8)과 같은 函數記號 $S(\cdot)$ 를 사용하였다.

$$S_i^* = S(UP_i^*, K_i/L_i^*, CA_i^*, IP_i^*, CR_i^*, ED_i^*, Z_i^*, PS_i^*, AD_i^*, ND_i^*, SI_i^*, OT_i^*, OP_i^*) \dots \dots \dots (14)$$

(+)(-)(+)(-)(-)(+)(-)(-)(-)(-)(-)(?)(?)

式 (8) 혹은 (14)를 S_i^* 와 UP_i^* 의 關係로 상정한 供給曲線은 [圖 1]의 $S(\cdot)$ 曲線과 같게 될 것이다.

4. 不均衡狀態로서의 貿易摩擦의 可能性

시장개방에 대한 國際政治市場의 完全性을 가정한다면 需要函數 式(7)과 供給函數 式 (8) 혹은 式 (14)를 이용하여 均衡市場開放水準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圖 1]의 경우로 比費用과 供給價格이 일치하는 均衡價格 P^e 에서 均衡市場開放水準 MO^e 를 얻게 될 것이다³⁵⁾. 이를 式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3) 앞의 註에서 논의된 한국의 독과점품목 保護傾向도 전략적 무역정책의 측면에서 합리화될 수도 있다.
 34) 限界生産費가 右上向曲線임을 假定. 이러한 가정의 한가지 흥미있는 시사점은 외국정부나 기업으로 하여금 市場開放度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限界로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다.
 35) 지금까지의 논의는 시장개방수요와 공급의 최종 결정자는 兩國政府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을 주어진 여건으로 간주한다면, 市場開放需要, D_i^* 는 통상의 公共財에 대한 수요

$$MO^e = MO(EP_i, CR_i, H_i, CA_i, K_i/L_{ui},$$

(+) (+)(-)(+) (+)

$$L_{si}/L_{ui}, T_i, Z_i, OP_i, CA_i^w, CR_i^w,$$

(+) (+)(+)(?)(+) (+)

$$K_i/L_i^*, CA_i^*, IP_i^*, ED_i^*, Z_i^*, PS_i^*,$$

(-) (+)(-)(+) (-)(-)

$$AD_i^*, ND_i^*, SI_i^*, OT_i^*, OP_i^*) \dots (15)$$

(-) (-) (-) (?) (?)

혹은 상첨자 *를 갖는 海外變數를 EL_i^* 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MO^e = MO(EP_i, CR_i, H_i, CA_i, K_i/L_{ui},$$

(+) (+)(-)(+) (+)

$$L_{si}/L_{ui}, T_i, Z_i, OP_i, CA_i^w, CR_i^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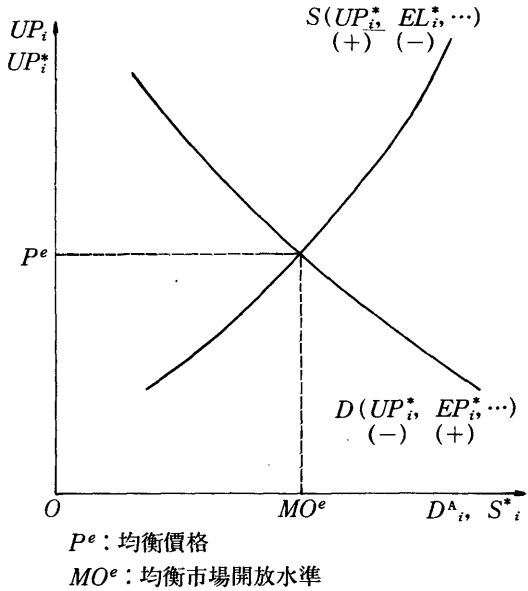
(+) (+)(+)(?)(+) (+)

$$EL_i^*, OP_i^*) \dots (16)$$

(-) (?)

그러나 여기서는 단순한 比較靜態分析보다는 오히려 均衡분석의 문제점을 논함으로써 시장개방요구에 따른 정치외교적 마찰의 불가

〔圖 1〕 市場開放의 需要(式 7) 供給(式 8) 曲線의 假想圖



피성을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로, 上記 均衡誘導過程에서 가정한 國際政治市場의 完正성은 國家間(혹은 兩國의 同種產業間)의 시장개방 협상과정의 전략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고 있다. 國際政治市場의 獨寡占的 構造, 특히 雙方獨占的 構造에 대한 고려가 도입될 경우 통상의 均衡분석보다도 전략적 게임(strategic game)의 측면이 강조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둘째로, 시장개방의 공급함수의 결정요인은 전부가 受容國의 국내변수이며, 시장개방의 수요함수는 期待利得, EP_i 를 제외하면 역시 開放要求國의 국내변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일방적으로 어느 일국의 통제 하에 놓여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단 불균형이 발생했을 경우 兩國은 가장 통제가 용이한 對外政治的 考慮變數인 OP_i^* 와 OP_i 의 조절을 통해 需要·供給曲線의 移動(shift)을

와 마찬가지로 n 個企業의 해당 i 産業의 시장개방에 대한 個別需要의 垂直的 合으로, 供給 S_i^* 는 n^* 個企業의 i 産業 市場開放에 따른 右上向의 限界費用曲線의 水平的 合으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때 시장개방의 限界費用 UP_i^* 는 기업의 비용으로 적절히 내부화된다고 상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需要側의 n 個企業의 상호경쟁과 공급측의 n^* 個企業의 상호경쟁을 통해 시장균형이 달성된다고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後述하는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국제정치시장의 불완전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均衡點으로의 접근은 오히려 경제력을 포함하는 국력을 바탕으로 한 國際政治協商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논평자중에서 특히 KDI의 楊秀吉, 李元暎, 金址瀉 博士는 均衡分析에 대한 비판을 제기해 주었으며 本節의 論議는 이러한 비판을 감안하도록 노력하였다. 관련하여 國際政治協商에 있어 경제력이 약한 小國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Jwa(1987)를 참조하기 바란다.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³⁶⁾.

세째로, 價格變數인 UP_i 와 UP_i^* 가 (圖 1)에서와 이 均衡價格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아진다. 우선 공급자의 입장에서 要求價格인 UP_i^* 의 回收可能性을 볼 때 수요자의 支拂價格인 UP_i 는 주로 自國政府의 국내지지기반 유지에 소비될 뿐 실제로 他國政府의 費用에 대한 報償形態로 이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시장개방에 임하는 정부가 느끼는 費用(perceived cost)을 UP_i 에 의해 보상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결여되고 있다. 특히 시장개방 수용국의 묵시적비용은 국제정치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시장개방에 따른 消費者剩餘의 增加側面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

네째로, 期待利得(EP_i)과 期待損失(EL_i^*)의 관계가 전술한 바와 같이 $EP_i \leq EL_i^*$ 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구조적으로 초과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공급자는 항상 수요가 지나치다, 수요자는 항상 공급이 충분치 않다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

로 마찰의 소지가 내재하고 있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構造的 特徵을 감안할 때, 이 모형에서의 不均衡 解消는 Marshall流의 價格調整메카니즘보다도 數量調節메카니즘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시 말해 (圖 1)의 경우 需要價格과 供給價格의 不一致가, 數量變數인 市場開放幅의 調節을 통해 더 용이하게 균형으로 접근하게 될 것으로 思料된다³⁷⁾. 이러한 시장개방에 대한 國際政治市場의 불완전성 또한 구조적 마찰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논의는 여러 면에서 推論的(speculative)이기는 하지만 시장개방에 대한 국제정치적 시장은 구조적으로 정치적 마찰을 야기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균형분석의 약점을 감안할 때 式 (15)나 (16)으로 표현하는 均衡市場開放式은 的確(exact)한 관계로서 보다는 시장개방의 압력과 대응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그 영향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휴리스틱」(heuristic)한 관계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균형분석이 갖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式 (15)나 (16)은 여전히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36) 이러한 예로서는 최근 미국이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通商法 301條에 따른 상대국의 市場閉鎖에 대한 報復輸入規制戰略이나 혹은 이 경우 異種產業間의 連繫報復戰略(예: 韓國의 쇠고기市場開放壓力으로서 한국으로부터의 自動車輸入規制 움직임 등)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37) 물론 이 경우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市場開放幅의 調整(速度)이(가) 價格變數의 調整(速度)보다 더 빠를 것이란 개념이 도입되고 있음에 주의하기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깊은 논의는 本稿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를 略함. 이러한 數量調節메카니즘의 巨視失業問題에의 應用은 Leijonhufvud(1986)의 第2章 참조.

III. 實證分析

1. 豫備的 論議

政治經濟學的 接近方法을 이용한 保護理論의 實證的 分析은 통상 需要函數와 供給函數

를 이용하여 均衡下에서의 縮約型均衡保護式 (예를 들면 式 (12))을 유도하고, 同式을 주로 「프로빗」(probit)이나 「로짓」(logit) 分析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시장개방의 경우는 式 (15)나 (16)에 대한 유사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從屬變數(MO^e)로서는 해당품목이나 산업의 시장개방 여부를 나타내는 質的變數인 1, 0 「더미」變數를 사용하거나 혹은 代用變數로서 相關품목이나 산업에 대한 보호 정도의 변화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극심한 자료의 불비로 인해 이러한 실증분석이 불가하였다. 대신에 여러 出處에서 가용한 정보를 이용하여 1982년 현재 한국의 非關稅輸入規制品目과 이 중 1983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對韓市場開放要求品目, 市場開放要求品目 중 현재까지 한국이 수용한 품목과 아직 미개방인 품목으로 나누어 몇 가지 분류기준에 의거 각 그룹의 일반적인 특성을 抽出하여 그룹 상호간에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서비스市場의 開放問題는 자료 제약으로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자료분석의 전제로서 非關稅輸入規制品目과 市場開放要求品目간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式 (6) 혹은 (7)로 요약되는 市場開放需要函數의 내용을 반영할 것이며 市場開放要求品目과 開放受容 혹은 未開放品目간의 특성의 차이는 式 (8) 혹은 (14)로 요약되는 市場開放供給函數의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보았다.

한국의 수입규제 품목중에서 미국이 특정의 품목을 골라 한국에 시장개방을 요구했을 경우 이러한 미국의 시장개방요구품목은 그 특성상 한국의 輸入規制品目一般에 비해 市場開

放需要函數의 결정요인중에서도 正의 符號를 갖는요인을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고려한 需要決定要因으로서는 韓國內의 保護率(PR_i^*), 韓國內의 産業集中率(CR_i^*), 美國內 同種産業의 産業集中率(CR_i), 美國內産業의 要素集約度($K_i/L_i, T_i$ 등), 美國內産業의 比較優位程度(CA_i, CA_i^*), 기타 期待利得(EP_i)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變數 등이다. 이론적인 시사점에 따르면, 市場開放要求品目的 경우가 輸入規制品目一般에 비해 $PR_i^*, CR_i^*, CR_i, K_i/L_i, T_i, CA_i, CA_i^*$ 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국의 市場開放要求品目中에서 특정 품목만을 개방했다면, 이러한 개방품목은 開放要求品目一般에 비해 市場開放供給函數의 결정요인중 正의 符號를 갖는 요인을 상대적으로 많이, 負의 부호를 갖는 요인을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할 것이다. 未開放品目的 경우는 오히려 이와 반대의 현상을 나타낼 것이다. 여기서 고려한 供給決定要因으로서는 韓國內의 産業集中率(CR_i^*), 韓國內의 保護率(PR_i^*), 韓國産業의 比較優位程度(CA_i^*), 韓國內産業의 要素集約度($K/L_i^*, T_i^*$ 등) 등이다. 이론적인 시사점에 따르면 市場開放要求品目一般(혹은 未開放品目)에 비해 개방품목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CR_i^*, PR_i^* 가 낮고 CA_i^* 는 높으며 勞動集約도가 높은 반면, 資本(K/L_i^*) 및 技術(T_i^*)集約도는 낮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需要와 供給側面을 분리해서 고려할 경우의 추가적인 이점으로서는 시장개방 여부의 결정과정에 있어 어느 측면의 결정요인이 최종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식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模型上의 其

他 政治的 考慮變數인 OP_i^* 나 OP_i 의 相對的 作用方向을 感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분석은 자료의 제약으로 극히 한정된 수의 변수들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모형에 비해서는 제한적인 성격을 갖는다 하겠다.

한편 자료상의 제약으로서는 관련자료의不在는 물론 品目分類上의 문제도 지대하였다. 品目分類方式에 있어서 市場開放要求品目에 대한 분류가 소위 “通稱分類”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입규제품목과 시장개방요

구품목 상호간의 품목분류방식의 불일치는 물론 이들 분류방식과 品目別 特性分類基準으로 사용한 자료의 품목분류방식과도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가능한 상식선에서 서로 품목의 종류를 일치시키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표본의 크기가 크게 축소되게 되었다. 이상의 자료의 제약에 대한 독자들의 양해하에 분석결과를 논해 보기로 하겠다. 分析統計는 <表 1>에 요약하였다.

<表 1> 輸入規制 및 市場開放要求品目の 諸般特性

(단위 : 該當品目數 / 標本數 (%))

	輸入規制 ¹⁾ 全品目 (318) 1982년 현재	市場開放要求 ²⁾ 品目 (57 ; 379) 1983~86년간	開放品目 ²⁾ (32 ; 245) 1987년 현재	未開放品目 ²⁾ (25 ; 134) 1987년 현재	
1. 名目保護率 ³⁾	50% 이상	14/214 (6.54)	3/40 (7.5)	1/25 (4.0)	2/15 (13.3)
	40% 이상	26/214 (12.15)	6/40 (15.0)	4/25 (16.0)	2/15 (13.3)
2. 名目保護率 > 實績關稅率	78/214 (36.45)	18/40 (45.0)	8/25 (32.0)	10/15 (66.7)	
3. 實效保護率 ³⁾ (Balassa方法) I	100% 이상	35/214 (16.36)	6/42 (14.3)	5/25 (20.0)	1/17 (5.9)
	70% 이상	48/214 (22.43)	10/42 (23.8)	7/25 (28.0)	3/17 (17.6)
	50% 이상	46/214 (29.91)	12/42 (28.5)	9/25 (36.0)	3/17 (17.6)
	—	92/214 (42.99)	15/42 (35.7)	7/25 (28.0)	8/17 (47.1)
4. 實效保護率 ³⁾ (Corden方法) II	100% 이상	22/214 (10.28)	3/42 (7.1)	2/25 (8.0)	1/17 (5.9)
	70% 이상	31/214 (14.49)	6/42 (14.3)	5/25 (20.0)	1/17 (5.9)
	50% 이상	42/214 (19.63)	10/42 (23.8)	8/25 (32.0)	2/17 (11.8)
	—	87/214 (40.65)	14/42 (33.3)	6/25 (24.0)	8/17 (47.1)

	輸入規制 ¹⁾ 全品目(318) 1982년 현재	市場開放要求 ²⁾ 品目(57; 379) 1983~86년간	開放品目 ²⁾ (32; 245) 1987년 현재	未開放品目 ²⁾ (25; 134) 1987년 현재
5. 國內의 産業集中率⁴⁾				
CR3	90% 이상 56/214 (26.17)	97/210 (46.2)	70/129 (54.2)	27/81 (33.3)
	80% 이상 81/214 (37.85)	123/210 (58.6)	93/129 (72.1)	39/81 (37.0)
H	70% 이상 22/214 (11.21)	36/210 (17.1)	28/129 (21.7)	8/81 (9.9)
	50% 이상 44/214 (20.56)	71/210 (33.8)	50/129 (38.8)	20/81 (24.7)
6. 美國內 産業集中率⁵⁾				
CR4	70% 이상 33/186 (17.74)	8/37 (21.6)	7/28 (20.0)	1/9 (11.1)
	50% 이상 74/186 (39.78)	18/37 (48.7)	16/28 (57.1)	2/9 (22.2)
	80% 이상 44/186 (23.66)	8/37 (21.6)	7/28 (25.0)	1/9 (11.1)
CR8	60% 이상 88/186 (47.31)	20/37 (54.1)	17/28 (60.7)	3/9 (33.3)
7. Hufbauer에 의한⁶⁾ 産業 特性				
1人當 資本額	50/144 (34.7)	9/26 (34.6)	8/22 (36.4)	1/4 (25.0)
技術集約度	50/144 (34.7)	12/26 (46.1)	12/22 (54.5)	0/4 (0)
規模의 經濟	75/143 (52.5)	20/26 (76.9)	17/22 (77.3)	3/4 (75.0)
消費財比率	62/143 (43.4)	10/26 (38.5)	8/22 (36.4)	2/4 (50.0)
8. 資本/ 勞動集約度에⁷⁾ 의한 分類				
資本集約的	122/214 (57.0)	21/57 (36.8)	13/32 (40.6)	8/25 (32.0)
勞動集約的	86/214 (40.0)	16/57 (28.1)	10/32 (31.3)	6/25 (24.0)
技術集約的	10/214 (5.0)	7/57 (12.3)	2/32 (6.2)	5/25 (20.0)
土地集約的	8/214 (4.0)	20/57 (35.1)	7/32 (21.9)	13/25 (52.0)
9. 開放選好度에 의한⁸⁾ 分類(Magee)				
資本側面	n.a. ¹⁰⁾	9/22 (40.9)	5/15 (33.3)	4/7 (57.1)
勞動側面	n.a.	10/22 (45.5)	7/15 (46.7)	3/7 (42.8)

		輸入規制 ¹⁾ 全品目(318) 1982년 현재	市場開放要求 ²⁾ 品目(57; 379) 1983~86년간	開放品目 ²⁾ (32; 245) 1987년 현재	未開放品目 ²⁾ (25; 134) 1987년 현재
10. 美國의 競爭力 ⁹⁾					
價格面	B			34/45 (75, 6)	
	S			7/45 (15, 6)	
	G			4/45 (8, 9)	
非價格面	B	n.a.	n.a.	16/45 (35, 6)	n.a.
	S			18/45 (40, 0)	
	G			11/45 (24, 4)	
其他面	B			45/45 (100, 0)	
	S				
	G				
11. 開放後 對美輸入의 推移 ⁹⁾					
輸入增加가 陽(+) 인 경우				40/50 (80, 0)	
$\Delta US > \Delta W$ (全體輸入)		n.a.	n.a.	31/50 (62, 0)	n.a.
$\Delta US, \Delta J$ (對日輸入)				22/50 (44, 0)	

註: 1) 品目出處: 韓國開發研究院(1982). I/O 分類에 따름.

2) 品目出處: 韓國貿易協會(1987). ()안의 숫자중 전항은 통칭분류, 후항은 CCCN 8단위 分類基準에 의함.

3) 資料出處: 韓國開發研究院(1982). 名目保護率, 實效保護率의 구체적인 計算方式은 金光錫·洪性德(1982)을 참조.

4) 資料出處: 韓國開發研究院, 經濟企劃院 統計局(1986). CR3, H는 1982년 현재 産業集中率임.

$$\text{여기서 } CR_k(\text{上位 } k \text{社 集中率}) = \sum_{i=1}^k S_i$$

$$H(\text{Herfindahl index}) = \sum_{i=1}^n S_i^2$$

단, S_i : 上位 i 번째 企業의 市場占有率

S_i : i 企業의 市場占有率

n : 企業數

5) 資料出處: U. 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1976). CR4, CR8은 1972년 현재 産業集中率임.

6) 資料出處: Hufbauer(1970). 숫자는 각 항목당 全體産業의 平均値를 上廻하는 産業 및 品目の 比率임.

7) 分類는 著者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거한 것임.

8) 資料出處: Magee(1978).

9) 資料出處: 韓國貿易協會(1978). 競爭國(주로 日本)과 비교한 美國의 競爭力資料로서 G: 美國이 優位, B: 劣位, S: 同等을 나타내며 기타면에는 아프트서비스, 납기일, 마케팅 등이 포함되며, 非價格面은 品質面임.

10) n.a.: 關聯資料 蒐集不可.

2. 資料分析

우선 國內保護率(PR^*)의 경우 1982년 12월말 현재의 名目保護率과 實效保護率을 다고려하였는데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시장에서의 期待利得을 반영하는 변수로서는 實效保護率보다는 名目保護率이 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³⁸⁾. 왜냐하면 美國內企業의 경우는 원료 및 中間投入物을 自國內市場에서 관세없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국내제품의 가격이 해당제품의 韓國內附加價值 수준보다도 더 중요한 利潤決定變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名目保護率과 實績關稅率의 크기를 비교하였는데 이는 명목보호율이 실적관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면 국내시장에서의 진입제한 등에 의해 독점적 가격결정을 행사하고 있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의 完全競爭市場과 통상의 需要供給曲線下에서는 국내의 가격의

- 38) 개략적으로 名目保護率은 국내가격의 국제가격에 대한 比率, 實效保護率은 국내가격으로 표시한 부가가치의 국제가격으로 표시한 부가가치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논의는 金光錫·洪性德(1982) 참조.
- 39) 이러한 결과는 한국정부의 시장개방에 대한 원칙이 開化된 政府의 假說과 일치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 40) 韓國內 產業集中率이 높은 품목 혹은 산업은 일반적으로 직간접의 政府 規制下에 놓여 있기 때문에 높은 집중률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높은 利潤率을 암시한다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 지적해 준 KDI의 李奎億 博士께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을 받아들이더라도 집중률이 높을수록 對政府로비의 강도는 높아질 것이며 美國企業에 비치는 “期待”利得도 높아질 것이라는 시사점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의 규제 자체도 內生化될 수 있음에 주의하기 바란다.

乖離率은 관세율보다는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表 1>에 의하면 명목보호율이 높은 품목의 比率(表 1의 第1列)과 名目保護率이 實績關稅率보다 높은 품목의 比率(表 1의 第2列)이 전체 수입규제품목에 비해 시장개방요구품목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需要函數의 이론적 시사점과 일치하고 있다.

한편 실효보호율의 경우(表 1의 第3, 4列)는 國內保護產業의 相對的附加價值水準을 측정하기 때문에 실효보호율이 높은 산업일수록 이윤은 높을 것이며 따라서 供給函數의 시사점에 의하면 시장개방에 대한 저항은 강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자료에 의해 지지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개방압력의 受容品目이 市場開放要求品目이나 未開放品目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실효보호율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⁹⁾.

다음으로 국내산업의 產業集中率(CR^*)을 비교하였다. 이 경우 상위 3社集中率($CR3$)과 Herfindahl指數(H)를 모두 이용하였다. 자료분석 결과(表 1의 第5列)에 의하면 개방품목의 산업집중률이 다른 어느 부류의 품목들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는 시장개방요구품목의 집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韓國內 產業集中率이 높은 경우, 이는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반대세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으나 동시에 美國産業에게 비치는 期待利得을 상대적으로 높임으로써 이 부문에 대한 미국측의 압력을 더 강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다⁴⁰⁾. 따라서 분석결과는 需要側面의 效果가 供給側面의 效果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겠다.

美國內의 關聯品目の 產業集中率(CR_i)의 경우(表 1의 第6列)도 위의 경우와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대했던 결과라 하겠다. 美國內의 산업집중률이 높을수록 관련품목의 시장개방요구압력은 강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要素集約度에 의한 一般特性的 분류를 시도하였다. Hufbauer(1970)의 자료를 인용하여 우선 同 資料에서 가용한 모든 산업을 要素內容(factor content)이 平均以上과 以下인 産業으로 분류한 뒤, 우리의 關心品目들 중 얼마의 비중이 平均以上인 산업에 포함되는가를 측정하였다(表 1의 第7列). 우선 수입규제품목과 시장개방요구품목을 비교할 때, 資本集約度는 서로 비슷하지만 技術集約도와 規模의 經濟는 後者の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체로 資本集約度의 경우를 제외하면 需要側面的 이론적 기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技術集約도가 높을수록 미국 기업의 비교우위는 높을 것이며, 規模의 經濟가 클수록 비교우위는 물론 對韓市場進出時 기대이윤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開放要求品目과 開放品目を 비교할 때는 결과가 공급측면의 이론적 기대와는 반대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산업집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기업의 이해관계가 한국기업의 이해관계를 압도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消費財生産比率에 의거해서 보면 市場開放要求品目과 市場開放品目の 소비재 비율이 수입규제품목이나 미개방품목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이 결과도 어느 정도 기대했던 방향과 일치한다 하겠다. 勞動集約的인 것으로 期待되는 消費財에 관한 한 한국의 비교우위는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한편 필자의 상식에 의거하여 要素集約도를

분류하여 보았다(表 1의 第8列). 이에 의하면, 資本集約度의 경우는 위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오고 있어 기대와 어긋나고 있다. 勞動集約度의 경우는 市場開放要求品目の 경우가 수입규제품목에 비해 높게 개방품목이 개방요구품목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어 理論的 期待에 부합된다. 土地集約的인 農産物의 경우도 技術集約度의 경우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要素所有者間의 개방에 대한 이해상충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Magee(1978)가 행한 미국의 22個産業에 대한 資本과 勞動間의 自由貿易 選好與否에 따른 분류를 인용하여 여기서의 關心品目이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를 추적해 보았다(表 1의 第9列). 前章에서의 논의에 의하면 시장개방요구품목의 경우는 자본에 의해 시장개방을 선호하는 비율이, 개방품목의 경우는 노동자에 의해 시장개방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後者の 期待는 지지되고 있으나 前者의 경우는 지지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한국시장에서의 비교우위(CA*) 여부를 보기 위해 시장개방 이후에 나타난 미국제품의 競爭力現況을 분석해 보았다(表 1의 第10, 11列). 價格面에서는 미국제품의 경쟁력이 일본을 주로 한 第3競爭國 제품에 비해 劣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品質을 포함한 非價格面에서도 상대적 열위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동 제품들의 對美輸入現況을 對日輸入現況과 비교할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다. 開放品目中 對美輸入增加率이 對日輸入增加率을 증가하는 품목의 비율은 44%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시장개방후 對美輸入이 증가

하고 있는 품목의 비율은 80% 이상, 해당 품목의 對美輸入增加率이 동 품목의 全體輸入增加率을 능가하는 품목의 비율도 62%에 달하고 있어, 일본에 비해 시장점유율의 증가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꾸준히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시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의 시사점은 우선 한국의 對美市場開放에 따라 무임승차자로서의 일본이 漁父之利를 얻고 있기 때문에 금후의 韓美市場開放 協議에 있어 일본으로 하여금 응분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메카니즘이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다음으로 미국은 한국의 輸入競爭財나 일본 이외의 第3國競爭國에 비해 비교우위를 유지함으로써 시장개방의 기대이득을 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이상의 분석과는 별도로 미국의 對韓市場開放要求의 強度를 측정하는 변수로서 미국의 品目別 市場開放要求回數와 해당 품목의 諸般特性과를 연결시킴으로써 市場開放需要函數의 시사점을 검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용한 자료가 공식채널을

통한 要求回數이기 때문에 비공식채널을 이용한 요구가 많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공식적 要求回數 資料가 얼마나 정확하게 시장개방 수요의 강도를 반영할 것이냐 하는 자료상의 문제가 따른다 하겠다. 또한 시장개방요구의 역사가 日淺하기 때문에 小標本(small sample)의 문제도 지대할 것으로 사료된다⁴¹⁾.

IV. 結 論

第III章의 자료분석 결과는 대체로 模型의 理論的 示唆點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료의 제약과 자료분석 방법의 단순성 등으로 인한 자료분석 결과의 한계를 인식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자료분석을 통해 얻은 한가지 흥미있는 부수적인 발견은 市場開放의 需要를 결정하는 요인이 상대적으로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을 압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시 말해 미국의 對韓市場開放要求의 선별적인 수용여부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국내 이해집단의 반대주장보다도 美側의 品目別 要求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반영되어 왔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⁴²⁾. 관련하여 第II章4項에서는 시장개방의 國際政治的 市場은 그 구조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마찰의 불균형을 야기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측면들을 감안하여 本章에서는 “엄격히 模型의 구조안에서” 미국의 對韓市場開放壓力의 완화 및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 반대세력의 완화방안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⁴³⁾.

41) 실제로 公式의 市場開放要求回數에 따라 關聯該當品目的 製반특성을 분류해 보았다. 이에 따르면 분석결과가 어느 한 쪽 방향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本文中에서 지정한 資料上的 문제점들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동 분석 자료에 대해 관심있는 독자는 필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

42) 그러나 本稿에서 개발한 模型은, 이러한 결과가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외교적으로 바람직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할 수 없음을 주의하기 바란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規制政策決定過程에 있어서 이해집단의 對政府로비의 역할이 한국의 경우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작다는 시사점을 주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한국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開化된 政府”의 假設에 맞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구해 왔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43) 여기서의 논의는 단순히 商品市場뿐만 아니라 서비스市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첫째로, 需要曲線을 이동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기업으로 하여금 시장개방요구에 따르는 비용이 높아졌다고 느끼거나 혹은(동시에) 시장개방에 따른 기대이익이 떨어졌다고 느끼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으로 對韓市場進入權의 公賣(auction)나 進入料의 부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무임승차자로서의 日本企業에게도 응분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⁴⁴⁾. 한편 美國企業의 期待利得을 낮추는 방안으로서, 국내시장에 잔존하는 進入制限을 철폐함으로써 독점적 이윤의 존립기반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방안은 결국 국내 生産者 剩餘를 포함하는 독점이윤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자하는 측면을 갖기 때문에 전략적 무역정책의 기본정신과도 일치한다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개방요구에 따른 美國企業의 로비費用 負擔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미국에 대해 對韓市場開放要求品目の 보다 엄격한 선별을 촉구하거나 아니면 美國企業이 개방요구를 직접 한국 정부에 진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선별성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4) 이 방법은 이론적으로 볼 때 미국의 輸入쿼터 公賣主張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하겠다.

45) 「렌트」追求社會에서의 制度改善方案으로서 Buchanan(1980)은 일부 제도에 대한 部分的(piecemeal) 개선보다는 憲法次元(constitutional)의 전반적인 광범위한 制度改革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前者의 경우는 該當制度改善에 따라 既存「렌트」를 잃게 될 집단의 개선에 대한 반대노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後者の 경우는 여러 제도의 同時改革에 따른 여러 이해집단간의 이해득실이 서로 상쇄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制度改革에 대한 反對로비의 강도가 그만큼 낮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국내의 供給函數를 이동시키는 방안으로서, 진입제한의 철폐를 통해 국내시장의 경쟁도를 높임으로써 사전에 국내기업의 期待損失을 낮추어 주거나 정부가 시장개방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여 명시적으로 규칙에 根據한(rule based) 정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내기업들에 의한 「렌트」追求型 로비활동의 여지를 없애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시장개방의 방법을 個別品 目別 혹은 產業別로 접근하는 것보다 서로 다른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는 정책「패키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後者の 경우 어느 一個產業의 개방에 따른 期待損失이 같은 「패키지」내의 다른 산업의 개방으로 인해 얻게 될 正의 期待利得에 의해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대한 반대의 강도가 그만큼 낮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능한 시장개방에 따른 經濟效率性의 側面에서 상호간에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이나 품목들을 同一「패키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⁴⁵⁾.

한편, 이러한 정책들 중에서도 지금까지 시장개방의 需要決定要因이 상대적으로 供給決定要因을 압도해 왔을 것이라는 證左에 비추어 볼 때 金후의 政策努力은 특히 需要曲線의 이동에 역점을 두도록 하는 것이 시장개방의 政治的 需要供給의 조화로운 균형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金후의 研究方向을 논함으로써 本稿를 마감하고자 한다.

우선 본 모형에 대한 실증분석 검증이 좀더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본자료의 정비 등 많은 작업이 요하겠으나 노력에 대한 대가는 높을 것으로 사료

된다. 다음으로 본 모형을 改善發展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 특히 최근의 경향인 戰略的 貿易政策理論이 좀더 체계적으로 도입됨으로써 本稿에서 缺하고 있는 국가간의 무역정책

의 상호작용 혹은 마찰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며, 그러한 모형의 개발이 實際政策決定에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參 考 文 獻 ◁

- 金光錫·洪性德, 「名目 및 實效保護率構造의 長期的 變化」, 韓國開發研究院, 1982.
- 楊秀吉, 「輸入自由化와 經濟運用」, 『經濟論集』, 第XXIII卷 第4號,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1984, pp. 509~545.
- 韓國開發研究院, 「產業政策의 基本課題와 改編方案」, 1982.
- 韓國開發研究院·經濟企劃院統計局, 「產業組織 統計資料集(1982)」, 1986.
- 韓國貿易協會, 「美國의 開放要請品目 輸入實態」, 1987.
- Baldwin, Robert E, "The Political Economy of Protectionism", in Bhagwati (1982b), 1982.
- , "Rent-Seeking and Trade Policy : An Industry Approach",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20, No. 4, 1984.
- , *The Political Economy of US Import Policy*, The MIT Press, Cambridge, Mass., 1985.
- Bhagwati, Jagdish N. "Lobbying and Welfar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4, 1980, pp. 355~363.
- , "Directly Unproductive, Profit-seeking(DUP) Activit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0, No. 5, 1982 a. pp. 988~1002.
- (ed.), *Import Competition and Respons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82b.
- , "DUP Activities and Rent Seeking", *KYKLOS*, Vol. 36, 1983. pp. 634~637.
- , and T.N. Srinivasan, "Revenue Seeking : A Generalization of the Theory of Tariff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8, No. 6, 1980, pp. 1069~1087.
- Buchanan, James M., "Towards Analysis of Closed Behavioral Systems", in James M. Buchanan and Robert D. Tollison (1972), pp. 11~23.
- , "Reform in the Rent-Seeking Society", in James M. Buchanan, Robert D. Tollison and Gordon Tullock (1980), pp. 359~367.
- , and Robert D. Tollison (ed.), *Theory of Public Choice : Political Applications of Economics*,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1972.
- , Robert D. Tollison and Gordon Tullock (ed.), *Toward a Theory of the Rent-seeking Society*, Texas A & M University Press, College Station, 1980.
- Caves, Richard E., "Economic Models of Political Choice : Canada's Tariff Structur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 9, May 1976. pp. 278~300.

- Chacholiades, Miltiades, *International Trade Theory and Policy*, McGraw-Hill Book Company, New York, 1978.
- Cline, William R., *Exports of Manufactures from Developing Countries: Performance and Prospects for Market Access*,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 C., 1984.
- Colander, David C. (ed.), *Neoclassical Political Economy: The Analysis of Rent-seeking and DUP Activities*,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Cambridge, Mass., 1984.
- Demsetz, Harold, "Two Systems of Belief about Monopoly", in Harvey J. Goldschmid H. Michael Mann and J. Fred Weston (ed.), *Industrial Concentration: The New Learning*, 1974, Columbia University Center for Economics Studies, Little Brown and Company, Boston, 1974, pp. 164~183.
- , "Purchasing Monopoly", in David C. Colander (1984), pp. 101~114.
- Grossman Gene M. and J. Dabid Richardson, *Strategic Trade Policy: A Survey of Issues and Early Analysis*, International Finance Section, Department of Economics, Princeton University, 1985.
- Helleiner, G. K., "The Political Economy of Canada's Tariff Structure: An Alternative Model",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 10, No. 2, May 1977, pp. 318~326.
- Helpman, Elhanan and Paul R. Krugman, *Market Structure and Foreign Trade*, MIT Press, Cambridge, 1985.
- Hufbauer, G. C., "The Impact of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Technology on the Commodity Composition of Trade in Manufactured Goods", in R. Vennon (ed.), *The Technology Factor in International Trade*,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70.
- Jacquemin, Ahexis, "Imperfect Market Structure and International Trade- Some Recent Research", *KYKLOS*, Vol. 35, 1982, pp. 75~93.
- Jwa, Sung-Hee, "Korea's Response to Protectionism in the Developed Countries", in 1987 *Joint Conference on the Industrial Policies of Republic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Conference Series # 6, Chung-Hu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 Taipei, Taiwan, 1987.
- Kierzkowski, Henry (ed.),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Trade*, Clarendon Press, Oxford, 1984.
- Krugman Paul R., "Increasing Returns and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NBER Working Paper #1752, 1985.
- , "Industrial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NBER Working Paper #1957, 1986.
- (ed.), *Strategic Trade Policy and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s*, MIT Press, Cambridge, 1986b.
- Lavergne, Real P., *The Political Economy of U.S. Tariffs: An Empirical Analysis*, Academic Press, Toronto, Canada, 1983.
- Leijonhufvud, Axel, *On Keynesian Economics and the Economics of Keynes: A Study in Monetary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68.
- Magee, Stephen P., "Three Simple Tests of the Stolper-Samuelson Theorem" in P. Oppenheimer (ed.), *Issues in International Economics*, Oriel Press, Stocks Field, 1978, pp. 138~153.

- Mueller, Dennis C., "Public Choice :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4, June 1976, pp. 395~433.
- Mussa, Michael, "Tariffs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 The Importance of Factor Specificity, Substitutability and Intensity in the short and long Ru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2, December 1974, pp. 1191~1203.
- Olson, Mancur,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 1971.
- Peltzman, Sam, "Towards a more General Theory of Regulat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 August 1971, pp. 211~240.
- Pincus, J. J., "Pressure Groups and the Pattern of Tariff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3, No. 4, 1975, pp. 757~778.
- Ray, Edward John, "The Determinants of Tariff and Nontariff Trade Restriction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9, No. 1, 1981, pp. 105~121.
- Samuelson Paul. A, "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XXXVI, November 1954, pp. 387~390.
- Stigler, George J.,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Spring 1971, pp. 3~21.
- , "Free Riders and Collective Action : An Appendix to Theories of Economic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Autumn 1974, pp. 359~65.
- , *The Citizen and the State : Essays on Regul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75.
- Tollison, Robert D., "Rent Seeking : A Survey", *KYKLOS*, Vol. 35, 1982, pp. 575~602.
- U. 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1976, *1972 Census of Manufactures*.